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20. 4. 28] [대통령령 제30648호, 2020. 4. 28, 일부개정]

개정이유

[일부개정]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선박이 피난·수리 등 긴급한 사유로 귀항하는 경우 등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출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박 출입 신고의 편의를 증진하고,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개별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.

<법제처 제공>

개정문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(인)

2020년 4월 28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

◎대통령령 제30648호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"적은 서면을"을 각각 "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"로 한다.

별표 2 제1호다목1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2)부터 4)까지를 각각 1)부터 3)까지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선피항선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호	60	80	100
나.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호	60	80	100
다.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박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3호	60	80	100
라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4호	100		
마.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장소에 계선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5호	100		
바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1호	150		
사.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6호	70	100	150
아. 법 제13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7호	70	100	150
자. 법 제14조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8호	90	120	180
차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인선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9호	70	100	150
카.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범선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0호	70	100	150
타.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1호	70	100	150
파.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속력 제한을 위반하여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2호	70	100	150
하.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다른 선박과의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선박을 항행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3호	70	100	150
거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2호	200		
너.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호출응답용 관제통신	법 제59조제1항제2호	150		

신을 청취·응답하지 않은 경우				
더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3호	150	200	250
러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선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예선업을 한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4호	150	200	250
머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. 다만, 법 제3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험물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통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59조제2항제15호	100	150	200
버.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5호의2	100	150	200
서.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1항제5호	150	200	250
머.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6호	100		
저.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7호	150		
처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8호	150		
커.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강력한 불빛을 사용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19호	60	80	100
터.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적이나 사이렌을 울린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0호	60	80	100
퍼.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경보를 울리지 않은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1호	60	80	100
허.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출석·진술이나 서류제출·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·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59조제2항제22호	100	150	200

부칙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